

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
공유재산관리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 호 식

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4일

3. 제안이유

-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단체별 개별입주 등 산재해 있어, 이를 통합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
- 이번 장애인회관 변경안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에서 원안의결 되었던 안건이 청주 밀레니엄타운 확장개발계획 추진으로 위치가 일부 변경됨에 따른 재심의 안건으로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《재심의 사유》

- 청주 밀레니엄타운 확장개발에 따른 위치 변경
-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신축 변경(안)

구 분	당 초	변 경
위 치	·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-1 (청주밀레니엄타운 내)	·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-18 (청주밀레니엄타운 내)
사업기간	· 2018 ~ 2020년	
규 모	· 부 지 : 3,300㎡ · 건축연면적 : 2,740㎡ (지하1층, 지상 4층)	
사 업 비	· 98억원 (부지 24, 건축 74)	

5. 검토의견

-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
 -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단체별로 개별 입주하여 각지에 산재해 있어, 이를 통합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여 장애인회관 설립계획안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바,
 - 금번에는 청주 밀레니엄타운 확장 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장애인회관 위치가 기존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-1에서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-18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- 장애인회관 설립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 받은 안건으로 금번에는 위치 변경에 따라 재심의 받고자 하는 것이며, 장애인회관의 위치는 모두 청주밀레니엄타운 내에 건축하는 것으로 설립의 목적 및 사용에 있어 기존 계획과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. 끝.